
환경정책 킬러규제 개선 과제

2023. 10.

목 차

대기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1
2.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 3
3.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4
4. 대기오염물질 검출 관리대상 기준 완화 5
5. 굴뚝원격감시체계(TMS) 활용유예기간 확대 6
6.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7
7.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기준 완화 8

통합환경

8.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기준 완화 9
9.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강화 10

목 차

화학물질

- 1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 개선 12
- 11. 화학물질 확인서 제출 면제 품목 확대 13
- 12. 기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신규 유독물질
적용시 영업허가 예외 적용 14

폐기물 · 순환자원

- 13.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15
- 14. 이차전지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정 및 재활용 촉진 .. 17
- 15.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합리화 18
- 16.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 보관기관 완화 19

기타

- 17. 4대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제한대상 시설 예외 확대 .. 20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률>

법률	규제 대상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5년 단위 주기적 강화)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 64종 -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부과
환경오염시설법 (‘15.12 제정, ‘17.1 시행)	19개 업종, 대기 및 수질 1·2종 사업장(연간 20톤 이상) * ‘17년부터 업종별 연차적 적용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대기관리권역법 (‘19.4 제정, ‘20.4 시행)	총량관리사업장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연간 SOx 4톤, NOx 4톤, TSP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정 후 총량관리사업장별로 배출량 할당 및 배출량 이행 관리 * 관리물질 7종(총량관리 3종) - 총량관리사업장 TMS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오염시설법’상 허가배출기준 적용, ‘대기관리권역법’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부담 급증
 - ‘대기환경보전법’은 ‘20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종전보다 평균 30% 강화
 - * 질소산화물(ppm) (종전) 20~530, (‘20.1) 10~250, (강화율) 28%,
황산화물(ppm) (종전) 10~540 (‘20.1) 10~250 (강화율) 32%,
먼지(mg/Sm³) (종전) 10~70 (‘20.1) 5~50 (강화율) 33%
 - ‘환경오염시설법’은 업종별 BAT를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
 - * 최대배출기준은 TMS 30분 데이터 중 이상값을 제외한 99% 신뢰도 구간 최고값이며, 30분 TMS 농도가 3번 연속 초과하면 기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의 70~80% 수준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전¹⁾

1) 공성용 외, 「통합법 시행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허가조건 평가 및 개선방안」, KEI 정책보고서 2019-01

-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에 따라 연도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당

<오염물질별·권역별 대기오염총량 할당결과>

(단위: 톤, %)

오염물질별	계	'19년 배출량	초기연도('20년)		최종연도('24년)		'19년대비 삭감률(%)	
			할당량	'19년대비	할당량	'19년대비		
	계	373,217	357,685	95.8%	228,453	61.2%	38.8	
	질소산화물(NOx)	263,054	240,679	91.5%	158,673	60.3%	39.7	
	황산화물(SOx)	105,952	112,271	106.0%	66,048	62.3%	37.7	
	먼지	4,211	4,735	112.4%	3,732	88.6%	11.4	
권역별	계	NOx	263,054	240,679	91.5%	158,673	60.3%	39.7
		SOx	105,952	112,272	106.0%	66,049	62.3%	37.7
	중부권	NOx	117,733	101,352	86.1%	72,294	61.4%	38.6
		SOx	36,296	41,014	113.0%	19,251	53.0%	47.0
	남부권	NOx	60,734	51,684	85.1%	35,480	58.4%	41.6
		SOx	26,969	29,615	109.8%	19,205	71.2%	28.8
	동남권	NOx	84,587	87,643	103.6%	50,899	60.2%	39.8
		SOx	42,688	41,643	97.6%	27,593	64.6%	35.4

*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10.19.)

- 기업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매년 배출농도를 낮추어야 하며, 배출농도 저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량을 줄여야 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통합허가를 받았음에도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해 농도규제와 총량규제를 동시에 적용받게 되어 이중 부담

□ 건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대기농도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배출허용기준 완화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허가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관리권역법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배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권의 이전을 동일 권역 내로 제한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조)

- 대기총량제가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장조성이나 활성화보다는 사업장 총량 규제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 부담 증가
 - 중견기업 특성상 지역별로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사업장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다르게 설정
 - 한 사업장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해당권역과 인접권역의 대기질 개선 목표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인접권역 사업장에 총량 이전이 불가, 배출초과과징금 납부사례 발생
- 공장 이전·신설 등 시설투자 확대시 오염물질 총량이 추가로 필요하나 권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한정되어 있어 신규투자에 어려움 발생
 - 신규투자시 신·증설분에 대한 추가할당량이 제한적이어서 권역(지자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기업은 신규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공장이전을 검토

□ 건의사항

-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으로 정부는 매년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전력소비 절감유인 제고 명목으로 거래 대상에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해 운영
- 배출권거래 대상을 생산공정상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열사용 등에 의한 간접배출도 포함해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
 - * 전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 발전사는 직접배출계수로 책정, 전력사용자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계수로 책정
- 국내 주력산업은 간접배출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
 - * 산업별 직간접 배출량 중 간접배출량 비중 : 조립금속(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66.7%, 화학 39.3%, 철강 13.7%, 비금속(시멘트 등) 10.4%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촉진방안 연구」, '20.12월)
- 특히, '21년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인해 기후·환경요금 추가 부담 및 전력산업기금*도 별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기업부담은 더욱 가중
 - *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서 3.7%를 따로 떼 적립
- EU,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배출만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만 간접배출을 포함해 규제

□ 건의내용

- 배출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TMS를 설치해야 하며, 자가측정을 통해 환경공단 등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함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실시간으로 자가 측정 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측정되고 있어 기업부담 증가
 -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은 클린룸 청정도 유지를 위해 내·외부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용하는 원자재 외에 외부 오염물질도 유입
- 특히, 공정상 발생될 수 없는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미등록된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 및 추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 부담 증가

현장애로사례

- A사는 반도체장비 제조업으로 사업장 특성상 반도체 클린룸 공조시스템을 상시 가동되며, 주변에 다른 기업의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이 부지경계선 10m 이내로 매우 근접해 있으며, 대기자가측정시 시안화수소(HCN)가 검출
- 당사 사업장 공정에서 시안(CN)물질을 포함한 원자재 사용하지 않으나 환경공단 점검측정 시 시안화수소(HCN)가 검출됨에 따라 시안화수소(HCN) 관리대상 사업장에 포함됨
- 당사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아님에도 시안화수소(HCN) 배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 외부 공기유입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오염물질 관리대상에서 제외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물질발생 1종~3종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하도록 명시
 - 또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4.3)으로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오염물질 총량 사업장은 TMS 부착을 의무화
 -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총량관리 인·허가 사업장이 TMS 부착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장은 1년 이내에 부착완료, 부착완료 후 6개월 내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을 두고 있음(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1.7)
- TMS 설치 이후 기업은 활용 유예기간동안 오염물질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야 하며, 활용 유예기간 종료 후 오염물질 허용기준 초과 시 배출부과금을 납부
- 특히, 활용유예기간 종료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출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게 될 경우 기업은 배출원인을 찾기 위해 공장가동률을 낮추거나 멈춰야 하는 상황 발생
 - TMS 설치 이후 기업이 규제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나 활용유예기간 6개월은 기업이 환경규제 이행을 준비하기에는 역부족

□ 건의사항

- 중견·중소기업 TMS 설치 완료 후 활용유예기간 연장(6개월→1년)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오염물질 연간 10톤 이상 발생 1~3종 사업장에 TMS 부착을 의무화하고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 행정제재로는 경고·조치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과태료 부과 등이 있으며, 형벌로는 벌금·징역 또는 벌금 부과

<TMS 부착 운영·관리기준 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현황>

	형벌		양벌규정	행정제재
	징역	벌금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년	5천만원	○	경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부착 측정기기에 대한 행위 금지 위반 - 배출시설 가동 시 측정기기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측정기기 고의 훼손 행위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 작성 행위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과태료 2백만원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x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과태료 2백만원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위반	1년	1천만원	○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조치명령 미이행		3백만원	○	

- 조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기업의 생산·납기차질→매출·이익 감소→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고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
- 이러한 과도한 형벌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여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건의사항

- TMS 미부착 및 운용·관리기준 관련 형벌 규정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은 공장가동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자가측정을 해야 함(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 그러나 현 법제도상 배출시설 가동시간에 따른 자가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생산라인을 짧은 시간 시운전하거나 하루만 가동하여도 자가측정을 해야 해 기업 부담으로 작용
 -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가측정 대상(1종~5종사업장) 및 제출내용(가동시간, 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자 등)만 명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2조)
- 오염물질배출 자가측정을 실시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체와 일정 조율을 해야하나 짧은 가동시간으로 인해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자가측정 대행에 따른 비용 부담도 증가

현장애로사례

- 중견기업 B사는 2차전지 양극화물질 제조업체로서 매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생산라인 시운전만 해도 오염물질배출 자가측정을 해야함
 - 시운전 시 먼저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일정조율이 필요하며, 일정이 안맞을 경우는 시운전도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자가측정 대행비용으로 매월 4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어 자가측정 비용에 대한 부담도 높은 상황

□ 건의사항

- 가동일에 따른 자가측정기준 합리적 마련 필요
 - 생산라인 가동 일수가 월간 가동 일수의 10% 미만인 경우 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오염시설법 개정(‘22.6.10)으로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의무화 및 겸직 금지(‘24.1 시행, 중소 ‘25.1 시행)
- 통합환경관리인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일반관리자)’로 구분하고 자격기준과 선임기준 등을 신설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23.10.5~11.14)
 -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대기환경기사(대기기사) 및 수질환경기사(수질기사) 이상 자격 모두 보유,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관련 업무 종사자, 대기환경산업기사(대기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4년 이상 환경관련 업무 종사자, 대기산업기사 또는 수질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관련 업무 종사자
 - ** **(사업장별 선임기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연간 80톤 이상(대기 1종) & 폐수 1일 배출량 2천㎥ 이상(물환경 1종) 사업장: 총괄관리자 1인 이상 & 일반관리자 2인 이상, 그 외 사업장: 총괄관리자 1인 이상 & 일반관리자 1인 이상
 -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일반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춘자
총괄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9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 **(겸직허용사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 연간 80톤 미만 & 폐수 1일 배출량 2천㎥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중소기업은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인원 수 증가와 자격요건 강화는 통합관리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존 환경관리인력의 대기업으로의 이탈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 차질 우려
- 중소기업은 겸직이 가능한 반면 중견기업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대기업으로 인력 유출시 환경인력 확보 애로 예상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및 자격기준이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과도해 피규제자인 기업에 경영 부담 가중

<환경 관련 법령 환경관리인 자격 기준 비교>

구분	환경오염시설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1종 사업장	총괄관리인 1인 및 일반관리인 2인 이상	대기기사 1인 이상	수질기사 1인 이상
2종 사업장	총괄관리인 1인 및 일반관리인 1인 이상	대기산업기사 1인 이상	수질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사업장		대기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환경 관련 업무종사자 1인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 관련 업무종사자 1인 이상

□ 건의사항

- 중견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시행시기 1년 유예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기준 등 완화

구분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시행규칙 건의안
통합 관리인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기사 및 수질기사 이상 자격 모두 보유 ·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대기산업기사 및 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대기산업기사 또는 수질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기사 및 수질기사 이상 자격 모두 보유 ·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대기산업기사 및 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2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대기산업기사 또는 수질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사업장별 선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1종 & 물환경 1종 사업장: 총괄관리자 1인 이상 & 일반관리자 2인 이상 · 그 외 사업장: 총괄관리자 1인 이상 & 일반관리자 1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1종 & 물환경 1종 사업장: 총괄관리자 1인 이상 또는 일반관리자 2인 이상 · 그 외 사업장: 일반관리자 1인 이상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춘자 · 총괄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문(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기술사 - 대기기사 및 수질기사 자격 모두 보유 &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대기산업기사 및 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9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춘자 · 총괄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문(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기술사 - 대기기사 및 수질기사 자격 모두 보유 & 2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대기산업기사 및 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6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비고 (검직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은 2년 이상 환경업무 종사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은 2년 이상 환경업무 종사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 현황 및 문제점

- 통합환경관리제도 단계적 시행(17)으로 기업은 통합허가서류 작성 등 환경관리제도 준비가 쉽지 않아 대부분 통합허가대행업자를 통해 제도이행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 중
 - * 중견기업의 70.7%가 통합환경관리제도 준비시 외부컨설팅 업체를 활용, 컨설팅 소요 비용으로는 평균 1억 2,960만원 임(중견련, '22.8)
- 그러나 통합허가대행업은 업무수행능력 등의 검증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춘 경우 환경부에서 등록허가를 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 준비 및 이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등록요건: 통합환경분야 고급인력 1명 이상 & 일반인력 4명 이상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오류 등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 실무담당자가 중복으로 업무를 다시 수행하는 등 기업의 업무 부담 증가

현장애로사례

- 중견기업 C사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대상 사업장으로 통합허가대행업체를 통해 대응
- 환경규제 이행을 위해 매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해야 함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매년 작성(매년 1억원 이상 대행업체에 지급)
-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기업 환경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여 바로잡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

□ 건의사항

- 통합허가대행업 자격 검증 요건 마련 등 등록기준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환경부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 운반업 사용업(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사용업자가 보유 화학물질을 동일 법인 내 다른 사업장으로 단순 이동할 경우 사용업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판매업 영업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및 추가 부담 발생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용자는 환경부에 화학물질 사용 허가신청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용용도 등 명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 신고만으로도 화학물질 소재 파악 가능
 - 사용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근로자 5천명 당 1명 선임해야 하는 반면, 판매업은 5백명당 1명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도 받아야 함

□ 건의사항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자가 동일 법인 내에 다른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을 경우 화학물질 확인서 제출 면제*(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 등록면제 화학물질 : 부산물, 불순물 등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8종 및 포도당, 녹말 등의 화학물질 44종(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화학물질 등록 품목 중 일부 품목은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화학물질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 기업부담 증가
 - 라벨, 테이프류 등 접착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 수입시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화학물질 확인서 제출을 요구
- 과도한 화학물질 확인서 제출 규제로 인해 제품 수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통관도 지연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제품개발, 신제품 검토 시료 입수 등에 어려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가중

□ 건의사항

-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 확인서 제출 면제

□ 현황 및 문제점

- ‘화평법’ 및 ‘화관법’에 따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매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유독물질 신규지정 수: 79개('19)→52개('20)→76개('21)→25개('22)→6개('23)(국립 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9.2.)

** '23년 현재 1,115개 유독물질이 지정

- 유독물질 신규지정 시 지정 이전부터 사용하던 사업장은 해당유독 물질에 대해 2년 유예 적용
- 기존 사업장에서 취급하던 유독물질이 신규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 영업허가를 위해 설비 등 사업장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기업부담 증가
- ‘화관법’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위한 서류도 복잡해 행정업무도 가중
- 특히,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이 2년 이내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허가 완료전 까지 사업장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 신규 유독물질 지정일 이전부터 취급하던 사업장은 영업허가 예외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이 인체 및 환경 무해성·경제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운영 중

순환자원 인정기준(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모두 충족)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하 경제성 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제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통상적 재활용 가능 여부, 유가성(有價性)과 유상거래 여부*, 시장수요 여부를 고려

* 가격조사자료, 실제 유통가격 조사,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실제 거래 가격(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안), 2017.12)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시행규칙 제6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 경제성 기준을 유가성(有價性)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구축 저해
- 실제로 순환자원 인정건수(465건) 중 왕겨 및 쌀겨(259건), 폐지류(115건), 폐합성고분자화합물(37건), 폐금속류(24건)가 94%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폐기물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

* 그 외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 식물성잔재물 13, 폐유리류 6, 무기성오니류 3, 분진류 3, 폐석고·폐석회 2, 폐목재류 1, 폐섬유류 1, 광재류 0, 폐사료 0(출처: 순환자원정보센터, '22. 9. 20 기준)

- 일반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사례 존재

<수요성(무상공급)으로 유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예시>

폐기물	용도	폐기물	용도
1. 폐내화물 파분쇄물	벽돌제조 원료	4. 자투리, 분말유리	판유리, 유리제품 원료
2. 탈황석고	석고보드 원료	5. 주조제품의 불량품	제강공장 제품 원료
3. 임목폐기물 톱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 감귤박	사료 원료

* (출처) 김도완 외, 중간가공폐기물의 용어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2022. 6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인정제도의 경제성 판단기준인 유가성 기준 합리화 필요

□ 건의사항

- (1안)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인 유가성(有價性) 기준에 비유가성*도 포함 하도록 수요성(需要性) 기준으로 개선

* 무상으로 공급되어 재활용 되는 경우 포함

- (2안) 유가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필요

- 유상거래 실적의 경우 순환자원 인정 후 6개월 이내 실적을 제출허용
-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동종 물질의 유상거래도 유가성 실적으로 인정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로 규정된 원료를 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함

* 폐기물 중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원순환법 9조) 지정폐기물, 수출입 규제폐기물, 유해물질 기준 이상인 것은 순환자원 인정기준에서 제외

- 이차전지 폐배터리에서 이차전지 필수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 희유금속을 회수해 원료로 재활용 가능

-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필수광물 채굴·제련, 사용후 배터리 매립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탄소배출량도 대폭 절감 가능

- 그러나, 이차전지 폐배터리는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을 1% 이상 함유하고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폐기물관리법령상 지정폐기물로 순환자원 인정받을 수 없음

* 환경부 유독물질 지정 고시 [별표] 유독물질(제3조 관련) 고유번호 2014-1-718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182442-9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자원민족주의, 미·중 무역분쟁, 러·우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니켈, 리튬 등 핵심광물*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재활용 산업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방안으로 대두

* 핵심광물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미국, EU, 중국 등은 R&D 투자·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추진 중

□ 건의사항

- 이차전지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순환자원 인정 및 재활용 촉진 정책 추진
- 이차전지 재활용대상 폐기물 관리기준 완화 (처리시설 외부건물 보관 등)

□ 현황 및 문제점

- 폐기물 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유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재활용업 허가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 사업장에 공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도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재활용업 허가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형 변경 시 유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납품처도 제한되는 등 기업경영에 차질 발생

현장애로사례

- D사는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해 고순도 산화아연 제품을 생산
- 사업 확장을 위해 제2공장 건설 중이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통보 승인을 받아 종합재활용업 허가 신청 준비 중
 - 현재 가동 중인 1공장과 동일한 재활용유형 R-3-2로 허가 추진 중이나, 신임 환경청 담당자는 재활용유형을 R-4-7 또는 R-3-3으로 변경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통보
- R-4-7 유형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외부 컨설팅 비용 뿐만아니라 평가 수행을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며, R-3-3 유형은 납품처가 한곳으로만 제한되어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 건의사항

-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시 폐기물 재활용 유형도 동일하게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정폐기물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종류별로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각각 45일과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 ①폐기물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②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 ③1년간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3톤 미만인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보관
- ** (45일)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축매 등, (60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
-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배출시 지정폐기물 품목과 성질에 따라 배출량이 다르며, 사업 여건에 따라 배출량이 정기적이지 않아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 발생
 - 생산활동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여도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며, 별도 지정운반 차량을 통해 처리해야해 처리량 대비 운반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

현장애로사례

- E사는 반도체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수기에는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많지만 비수기에는 배출량이 적음. 그러나 지정폐기물 수거는 배출량과 상관없이 45일 이내에 수거해 가고 있는 상황
- 지정폐기물의 품목 및 성상별로 배출량이 다름에도 보관기한 내에 별도 지정 운반차량을 통해 처리함에 따라 처리량 대비 운반비용에 대한 부담 가중

□ 건의사항

-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탄력적으로 운영
 -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경우 보관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4대강 유역*에 기준농도**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 4대강 :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환경부 고시 2022-262호, 263호, 264호, 266호] 4대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제한대상시설) 1항 1~6호

1호 폐수시설 분류 중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호~6호 생략

-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4대강 유역에 입지한 기업 활동을 제한
 - 예외 허용 시설 외에도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4대강 유역으로 배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공장증설·설비투자 등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

□ 건의사항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4대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제한대상시설 예외대상 확대